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윤철한 정책실장, 서회원 간사(02-3673-2141)
- 시행 : 2019. 08. 28.(총 12매)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해야! 경실련, 권익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늦었지만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28일)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최근 공직자가 업무수행 과정상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직자의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의 사적이익을 위한 부동산 거래,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상대로한 채용 청탁, 공사나 용역발주 비리 등 사례도 다양하다.
3.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선언으로만 규정할 뿐, 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대한 금지와 처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러한 한계로 지난 2013년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에서 터진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4. 따라서 직무 수행과정에서 공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직무와 연관된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신고·회피 의무부과, 사적인 금전 및 부동산거래 금지,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5.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권익위 제정안은 법률 적용 대상자에 공직자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학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 적용 직무범위도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분야만 적용하는 열거 방식이 아니라,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직무 분야로 확대하는 포괄 방식**으로 수정해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
- 사적 이해관계 방식과 관련하여 권익위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이 회피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외부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의 기본 정보에 대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한편, 이해충돌방지 제한 규정에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활동 혹은 외부활동 금지,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권익위안과 같이 공직자 소속 ‘공공기관’에 한정할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 또한, 이해충돌방지 금지 규정에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입차한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권익위안과 같이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으로는 공개된 정보 이용을 활용한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직무 관련 정보’를 통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로 확대**해야 한다.
-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 권익이안은 이해충돌 금지의 경우 과태료 중심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제한 규정과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실형 등 **형사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5. 경실련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한다. 반부패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의 직무 과정상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
- 붙임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요약>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내용	권익위 안	경실련 의견
적용대상 및 직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제2조의 2)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 되는 사학 관계자도 포함 법률의 규제를 받는 직무 내용을 16개로 열거주의에 기초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주의에 기초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으로 확대함.
사적 이해관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공직자나 가족,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사외이사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안 2조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함
사적 이해관계 방지 방식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회피 신청(안 5조) 직무 내용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 사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에 있음을 인지 시 신고토록 해서는 외부적 감시가 어려우므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사전에 사적 이해관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 공개 시 사적 이해관계 사실 내용 일체
이해충돌방지 제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부동산 거래 신고(안 8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외부활동 금지(안 9조)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 행사 제한(안 10조)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영향력 행사 제한(안 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제한/금지로 수정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같은) 가족채용 제한 규정은 소속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 관련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일체 계약체결 제한 규정 역시 소속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 관련 기관'으로 확대
이해충돌방지 금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안 12조).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됨(안 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와 함께 예산의 부정 사용 금지도 추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로는 공개된 정보의 이용을 활용한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로 수정
이해충돌방지 및 처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공직자가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확인 점검. 소속기관장은 사적 이해관계 회피 위반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이용금지 규정 위반 시 재산상 이익 환수 가능(안 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되,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소속기관장은 권익위안의 경우 뿐만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관련 업무 관련 정보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의 경우에도 부당이득 환수
처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중심 처벌하되,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만 징역 또는 벌금(안 24조부터 제26조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해충돌 제한 규정 및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물론 벌금이나 실형으로 처벌 강화

<전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I.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함.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함. 이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국회의원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1)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상대로 채용을 청탁하는 사례임. 2) 또, 장관이 자녀를 특별채용한다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음.
- 그러나 그동안의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면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2조2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을 2011년에 신설했으나 선언적 의미의 법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업무수행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또, 1993년부터 본격화된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는 공직을 활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음. 공직자 재산의 70%가 부동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 2005년에 도입된 주식 백지신탁제도 역시 제대로 된 직무관련성 시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로 지난 2013년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입법화하려고 했으나, 현실성의 문제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음.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규제하는 법률 조항은 가지고 있으나, 공직자 자신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을 규제하는 법률 조항은 가지고 있지 않음. 즉,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는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인 민간기업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규제는 없어 현행법으로 공직자의 채용 청탁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음.
-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상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적극적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해야 함.

1) 손해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2)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특별채용,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딸의 대기업 취업청탁 의혹

II.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

1. 적용대상 공직자와 공직자의 직무 범위

1) 권익위 안

- 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임(제2조 2 정의).
-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겪을 수 있는 직무 범위는 다음의 16개 유형을 포함한다.
 - 인·허가, 승인
 - 조사·검사
 - 예산·기금
 - 계약
 - 수사·재판
 - 채용·인사
 - 청문·감사 등

2) 경실련 의견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학관계자도 포함해야 함.
 - 이미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판결에서도 그 타당성이 확인된 바 있음

헌법재판소 16.0728 2015헌마236 합헌결정 3)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초과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다..

- 또, 권익위 안은 이해충돌 방지 제한을 받는 직무 범위를 16개를 열거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 밖의 직무에서도 얼마든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에 기초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 범위 일반'으로 확대해야 함.

3) 헌법재판소 16.0728 2015헌마236

합헌결정 https://ecourt.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5%ED%97%8C%EB%A7%88236&viewType=3&searchType=1

2. 사적 이해관계 사실 규정 관련

1) 권익위 안

- 권익위는 제19대 국회 정부 제출안에서 논란이 됐던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 규정을 구체화했음(안 제2조의 4).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혹은 다른 공직자임.
 -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또, 권익위 안은 사적 이해관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음(안 제2조의 5)
 - 해당 공직자나 가족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사외이사로 있는 법인, 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 등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2) 경실련 의견

- 권익위 안 동의함.

3. 이해충돌방지 신고 방식 및 신고내용 관련

1) 권익위 안

- 법률 적용대상 공직자가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함((안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 그리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회피 신청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피 신청

2) 경실련 의견

-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 방식과 관련하여 권익위 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함. 하지만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할 경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 신고 내용은 앞에서 정의한 사적 이해관계 사실 내용 일체를 포함함.

4. 이해충돌방지 제한 규정

1) 권익위 안

- 법률 적용 대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를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함. (안 제 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직자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
- 법률 적용 대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해서는 안 됨(안 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송·계약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행위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영리 행위를 관리·운영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활동
- 법률 적용 대상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안 제10조 가족채용 제한).
 -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은 제외),
 -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아니 됨.
- 법률 적용 대상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안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 대표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 고위공직자와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조정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아니 됨.

2) 경실련 의견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도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신고 규정이 아니라, 금지(제한)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함.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고, 공정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 금지로 해야 함(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
- 가족채용 제한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민간기업 대상 채용 청탁이 많고,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채용 청탁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제한 규정을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한정시켜서는 안 되고, 공직자와 직무상으로 연관된 기관 모두 포함해야 함.
-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하여 권익위 안은 공직자 소속 공공기관만을 포함하는데 이 역시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함.

5. 이해충돌방지 금지 규정

1) 권익위 안

- 법률 적용 대상 공직자는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안 제12조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 공직자는 다른 법령·기준·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됨.
- 법률 적용 대상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됨(안 제13조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며,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

2) 경실련 의견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이외에도 기타 2013년 정부안에는 있었지만, 이번 권익위 안에서 삭제된 예산의 부정 사용 금지도 포함되어야 함.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현재 입법 예고된 권익위 안은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업무상 비밀이용죄와 같이 ‘업무성’, ‘비밀성’ 등의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까다로움.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로는 국민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임. 따라서 ‘업무상 비밀’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는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를 금지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업무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부패방지법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위 법의 제정목적이 부패행위,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한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므로,**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 역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와 동일하게 **공직자가 법령상 관장하는 업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직자의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직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1도670 판결 참조).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도7339 판결 참조).

출처 : 2006. 12.8 선고 2006도6410판결 [부패방지법위반] [공2007.1.15.(266), 167]

6. 이해충돌 방지 업무 관련

1) 권익위 안

- 법률 적용대상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에 있더라도 소속기관장의 판단하에 해당 공직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규정 있음. 소속기관장은 다음의 경우 업무를 그대로 맡길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됨.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국가 안전보장,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의 회피를 위반하거나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0조 부당이득 환수).

2) 경실련 의견

-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되,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설치, 그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켰음. 그 결과,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약화되어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청탁 방지 업무, 기타 부패방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배정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반부패5개단체 청원 안, 2019.3.19. 참고).
- ‘업무 관련 정보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의 경우 비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라도 업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함.

7. 처벌 규정

1) 권익위 안

- 법률 적용대상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 거래 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활동 금지조항을 어기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더 엄격히 처벌받음. 취득한 이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징계, 벌칙 및 과태료).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징계를 의무화함.
 -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또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사적 이익 또는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등은 위반행위별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표〉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처벌 관련 조항

위반	벌금 및 과태료
사적 이해관계 신고(안 제5조의 1항)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 관련 외부활동(안 제9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기관 물품 사적 용도로 사용 수익(안 제12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족 채용(안 제10조 2)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익계약 체결(안 제11조 2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경실련 의견

- 권익위 안이 과태료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는 물론 벌금이나 실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신고 규정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하되, 제한/금지 규정(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 관계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외부활동 제한,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채용 영향력 행사 금지, 직무 관련 기관에 수익계약 체결 영향력 행사 금지/ 예산의 부정 사용 금지, 공공기관 물품 사적 용도 사용, 직무상 정보 이용 금지)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실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함. 특히,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함.

Ⅲ. 총평

- 공직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됨.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부동산을 거래한 의혹,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는 빈번히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 따라서 국회는 권익위가 입법 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함. 사실 공직자윤리법이나 부정청탁 금지법도 넓게 보면 모두 이해충돌의 금지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임.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속히 입법화해 공직을 통한 사익추구 금지를 이루어내야 함.
- 이밖에 고충 처리와 반부패기능을 하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전과 같은 부패방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는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또, 권익위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다루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의 연계성을 마련해야 함. 또, 청탁금지법 개정 당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라는 것이었던 만큼, 권익위는 입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기타 권익위 안이 담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7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권익위 안에서는 제외된 퇴직공직자와의 접촉제한 규정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공개제도 및 퇴직공직자와의 접촉제한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